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4,363,512	9,430,905
일반회계	280,672,496	8,420,175
특별회계	33,691,016	1,010,730
기타특별회계	33,691,016	1,010,7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80,162	125,405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695,024	20,851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265,000	7,95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623,175	18,69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159,953	124,799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17,306,280	519,18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387,980	71,639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009,334	30,28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2,934,536	88,036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29,572	3,887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74,25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